의 안 번 호

2004

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9. 30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9. 30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10. 17.(월)

2. 제안이유

- 가.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각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.
- 나. 울산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의 기능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와 일부 중복되어 축제위원회의 기능을 정리하고, 각 축제별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명 변경: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
 - →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
- 나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 - 지역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다.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~제3조)
 - 지역축제의 정의
 - 구청장은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해야 함

- 라. 축제추진위원회 기능, 구성, 임기, 제척, 해촉(제4조~제8조)
 - 지역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 설치·운영 가능
 -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, 축제의 결산 및 평가, 기타 필요한 사항 수행
 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
 - 위원의 임기는 2년(2회 연임가능), 해촉사유 발생시 해촉 가능
 - 협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
- 마.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의 운영(안 제9조~제10조)
- 바. 사무국의 설치, 공무원의 파견, 간사(안 제11조~제13조)
 -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정함
 -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 가능
 - 간사는 지역축제별 담당계장, 사무국 설치 시 사무국 직원
- 사. 축제의 위탁 등, 예산의 지원 등, 이용료 징수(안 제14조~제16조)
 -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, 대행 가능
 - 축제 예산, 추진위원회 운영 비용, 기타 필요한 비용 지원
 -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참가비,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음
 - 징수 대상, 금액은 구청장이 정함

4. 근거법규

- 가. 「문화기본법」제9조
- 나.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3조
- 다. 「지역문화진흥법」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각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문화기본법

제9조(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1. 문화유산 ·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
- 2. 국어의 발전과 보전
- 3. 문화예술의 진흥
- 4. 문화산업의 진흥
- 5.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
- 6. 문화복지의 증진
- 7. 여가문화의 활성화
- 8.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
- 9. 국제 문화 교류 · 협력의 활성화
- 10. 지역문화의 활성화
- 11.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

문화예술진흥법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 하여야 한다.

지역문화진흥법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.